



사 단 「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
 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

수 신 한방과 개설 병원장

참 조

제 목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행위분류 및 산정기준 안내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3554(2015.9.8.)

2. 한방물리요법(허-2, 49020)에 대한 세부적인 행위분류가 없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시 혼란이 초래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규정내용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산정기준	금액
한방 물리 요법 (허2-1)	93023	가.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1일당]		실제 소요 비용
	93024	나. 경피경근온열요법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동시)	같은 날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과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은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해당 소정 점수
	93025	다. 경피적외선조사요법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동시)		
	93026	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은 수상 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입 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하여,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	실제 소요 비용
	93027	마. 경근간섭저주파요법(IFT)		
	93028	바. 경추 견인		실제 소요 비용
	93029	사. 골반 견인		실제 소요 비용
	93030	아. 도인운동요법[1일당]	손상이나 질환 등으로 통증이나 장애가 나타난 근 육과 척추, 관절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당 부위에 10분 이상 운동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	실제 소요 비용
	93031	주. 도인운동요법[1일당] 금액의 50% 가산		

93032	자. 근건이완수기요법[1일당]	근건이완수기요법 [1일당]은 해당 부위에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 도인운동요법의 금액을 산정하며 '주'항을 동일 적용한다.	실제 소요 비용
93033	주 : 근건이완수기요법[1일당] 금액의 50% 가산		
93034	차. 한방물리요법-기타	온냉경락요법(하-70) 및 93021 내지 93033에 분류된 행위를 제외한 한방물리요법	실제 소요 비용

*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한정함

나. 기타 : 추나요법(하-2,93021-93022)에 대한 산정기준

- 1)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가요법은 1일 2회 이상 실시하였더라도 1회만 산정함
- 2) 추차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은 1일 2종 이상 실시하였더라도 1종만 산정함

다. 적용일 : 2015.10.1. 진료분부터 적용. 끝.

수신처 : 한방과 개설 병원장

대한병원협회장



대리 김수한 팀장 노환우 국장 류항수

시행 : 보험 제 2015-439 (2015.09.16)

우 121-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마포동 35-1) 현대빌딩13층 대한병원협회 / 홈페이지 : www.kha.or.kr

전화 02-705-9254 전송 02-705-9259 (대표FAX : 02-705-9209) E-mail : kimsh@kha.or.kr